# 고 양 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시보

【제 1159 호】

2015년 03월 03일 (화)


| 선람 | 기 관 의 장 |
|---|---|
| | |

| 회 람 | | | | | | | |
|---|---|---|---|---|---|---|---|
| | | | | | | | |

## 차 례


**입법예고**

| | | |
|---|---|---|
| 고양시 입법예고 제2015-14호 |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

**고 시**

| | | |
|---|---|---|
| 고양시 고시 제2015-62호 | 도시계획시설(대로2-12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20 |
| 고양시 고시 제2015-63호 | 도시계획시설(오수중계펌프장)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21 |
| 고양시 고시 제2015-64호 | 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22 |



발행 : 고 양 시 편집 : 공보담당관

(우) 412-70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10(주교동 600) ☎ (031) 8075-2095

고양시 입법예고 제2015 - 14호

#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 월 3 일

##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개정과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에서 전파된 개선과제를 반영, 규제완화 차원에서 용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완화 및 관련 법령 인용 조문 등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상 근거 없는 규제 정비(안 제6조 및 안 제25조)

나.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사항을 시행령에서 해당사항을 직접 규정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삭제(안 제9조)

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공작물 설치의 수평투영면적 기준 완화(안 제16조)

라.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의 지구단위구역내에서 개발행위허가 기준 완화(안 제19조)

마. 방재지구 및 보존지구 내 건축제한 추가(안 제46조의2 및 안 제46조의3)

바.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용적률 규제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125퍼센트 이내에서 각각 완화(안 제56조 및 안 제61조)

사. 무허가 축사 양성화 등을 위한 건폐율 완화 등(안 제60조)

아. 생산녹지지역 등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준공된 기존 공장에 대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증축 시 한시적으로 건폐율 완화(안 제60조의3)

자. 건축물의 용도 등 건축제한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기존공장이나 제조업소의 경우에도 기존업종보다 오염배출수준이 같거나 낮을 경우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도록 함.(안 제63조의2)

차.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채납 하는 경우 기부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에서 정하는 용적률의 120퍼센트나 시행령 최대한도내에서 용적률 완화(안 제64조의2)

카. 생산녹지지역 등에 입지가능 한 식품공장의 범위 확대(안 별표 16, 안 별표 18, 안 별표 22)

타. 생산관리지역 등에서 설치하는 자원순환 관련시설을 구체화 함(안 별표 18 및 안 별표 20)

## 4. 자치법규안 : 별첨

##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5년  3월  23일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도시계획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 전 화 :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031-8075-3076)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 |

고양시 조례 제 호

#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을 “(추진기구 운영 등)” 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6조제2호가목 중 “수평투영면적이 25제곱미터” 를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로, 같은 목 단서 중 “각 호의 1” 을 “각 호의 어느 하나” 로 한다.

제16조제2호나목 중 “수평투영면적이 75제곱미터” 를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로, 같은 목 단서 중 “각호의 1” 을 “각 호의 어느 하나” 로 한다.

제19조 제2항 중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 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와 지구단위계획구역” 으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별표 1의2 제2호” 를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2)” 로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별표 1의2 제2호” 를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2)” 로 한다.

제23조 중 “영 별표 1의2 제2호” 를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가)” 로 한다.

제25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29조제1항 중 “기반시설의 설치” 를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로 한다.

제29조의2 중 “영 제59조의2” 를 “영 제59조의2 제4항” 으로 한다.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칙(대통령령 제23718호, 2012.4.10.) 제1조 및 제3조” 를 “부칙(대통령령 제17816호, 2002.12.26.) 제13조제1항” 으로 한다.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종자연경관지구” 를 “자연경관지구” 로 한다.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종수변경관지구” 를 “수변경관지구” 로 한다.

제46조의2 및 제4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방재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재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제46조의3(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제1호에 따라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안에서는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

재를 직접 관리·보호하기 위한 건축물과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외에는 이를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은 그 문화재의 보존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문화재보호법」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았거나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5조 제3호, 제4호,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6조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 수립내용에 따라 50퍼센트 이하

제59조의 제목 “(방화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를 “(방화지구 등에서의 건폐율의 완화)”로 한다.

제60조 본문 중 “50퍼센트 이하”를 “60퍼센트 이하”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버섯재배사와 콩나물재배사는 제외한다.

제60조의3 중 “제51조”를 “제57”로 하고, “제31조”를 “제35조”로 하여 같은 조를 제60조의 5로 한다.

제60조의2를 제60조의4로 한다.

제57조의2를 제60조의2로 한다.

제6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3(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의2 제2항에 따른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

다)이 추가편입부지에 증축하는 경우(2016년 12월 31일까지 증축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적용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61조제1항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 수립내용에 따라 125 퍼센트 이하

제63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중 “영 제93조제2항”을 “영 제93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영 제93조 제4항에 따라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

제6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2(사회복지시설 기부에 따른 용적률 완화) 영 제85조 제11항에 따라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별표 16 제9호 가목, 별표 18 제8호 및 별표 22 제11호 중 “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식품공장”으로 한다.

별표 18 제12호 및 별표 20 제9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같은 호 나목부터 마목까지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에 한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

나.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

다. 기존시설의 환경개선을 위해 기존부지내에 설치하는 건축물 및 시설

별표 19 중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것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외의 지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되는 경우(영 별표 20 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것으로서 영 별표 20 제1호자목(7)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레미콘, 아스콘 공장(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고양시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은 제외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소관과 | | 도시계획과 |
|---|---|---|
| 입안자 | 과 장<br>직위·성명 | 도시계획과장<br>김 영 덕 |
| | 팀 장<br>직위·성명 | 도시계획팀장<br>이 재 학 |
| | 담당자<br>성명·전화 | 김 창 용<br>(031-8075-3076) |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4조 (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 ③ (생략) | 제4조 (추진기구 운영 등)<br>① ~ ③ (현행과 같음) |
|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br>1. (생략)<br>2. 대상지 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br>3. (생략)<br>② (생략) |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br>① ----------<br>----------<br>----------<br>----------<br>---------.<br>1. (현행과 같음)<br>2. <삭 제><br>3. (현행과 같음)<br>② (현행과 같음) |
| 제9조 (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 제25조제4항 본문의 단서에 따라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삭 제> |
| 제16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에 따라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br>1. (생략)<br>2. 공작물의 설치<br>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25제곱미터 | 제16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br>----------<br>----------.<br>1. (현행과 같음)<br>2. ----------<br>가. ----------<br>----------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br>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br>다. (생략)<br>3. ~ 6. (생략) | ----------<br>----------각 호의 어느 하나<br>----------<br>----------<br>----------.<br>나. ----------<br>----------<br>----------<br>--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br>----------<br>----------각 호의 어느 하나<br>----------<br>----------<br>---.<br>다. (현행과 같음)<br>3.~ 6. (현행과 같음) |
| **제19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생략)<br><br>②제1항은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9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현행과 같음)<br>②----------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와 지구단위계획구역----------. |
| **제20조 (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br>1. ~ 3. (생략) | **제20조 (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br>----------영 별표 1의2 제2호 가목(2)----------<br>----------<br>----------<br>----------<br>----------<br>----------. <br>1. ~ 3. (현행과 같음) |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제21조 (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br>1. ~ 6. (생략) | **제21조 (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영 별표 1의2 제2호 나목(2)----------.<br>1. ~ 6. (현행과 같음) |
| **제23조 (토지분할제한면적)**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 **제23조 (토지분할제한면적)** --------영 별표 1의2 제2호 라목(1)(가) ----------.<br> |
| **제25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br>1. (생략)<br>2.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경우<br>3. (생략)<br>② (생략) | **제25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 ---------.<br>1. (현행과 같음)<br>2. <삭 제><br>3. (현행과 같음)<br>② (현행과 같음) |
| **제29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예치금액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9조제6호에 따른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안에서 산정하되 총공사비의 20 | **제29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 |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퍼센트 이하로 한다. | ----------. |
| ② (생략) | ② (현행과 같음) |
| **제29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영 제59조의2에 따른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고양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규정」제8조에 따라 실시하는 “실무종합심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다. | **제29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영 제59조의2 제4항----------. |
| **제3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부칙(대통령령 제23718호, 2012.4.10) 제1조 및 제3조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br>1. ~ 22. (생략) | **제3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부칙(대통령령 제17861호, 2002.12.26) 제13조 제1항 ----------.<br>1. ~ 22. (현행과 같음) |
| **제32조 (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제2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br>1. ~ 16. (생략) | **제32조 (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자연경관지구----------.<br>1. ~ 16. (현행과 같음) |
| **제34조 (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제2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br>1. ~ 17. (생략) | **제34조 (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수변경관지구----------.<br>1. ~ 17. (현행과 같음) |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신 설> | **제46조의 2 (방재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재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br>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br>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br>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br>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관련 순환시설<br>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br>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
| <신 설> | **제46조의3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제1호에 따라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안에서는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를 직접 관리·보호하기 위한 건축물과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외에는 이를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은 그 문화재의 보존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문화재보호법」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았거나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제55조 (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해당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 **55조 (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 ---------- |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범위안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
| 1. ~ 2. (생략) | 1. ~ 2. (현행과 같음) |
| 3. 방재지구 | 3. <삭 제> |
| 4. 보존지구 | 4. <삭 제> |
| 5. ~ 6. (생략) | 5. ~ 6. (현행과 같음) |
| 7. 경관지구 | 7. <삭 제> |
| **제56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56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
| 1. ~ 21. (생략) | 1. ~ 21. (현행과 같음) |
| <신 설> | 22.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 수립내용에 따라 50퍼센트 이하 |
| **제59조(방화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 **제59조(방화지구 등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
| ① ~ ④ (생략) | ① ~ ④ (현행과 같음) |
| **제60조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농지법」 제32조제1항제3호는 농업인주택의 경우에 한하며, 버섯재배사는 제외한다. | **제60조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 다만, 버섯재배사와 콩나물재배사는 제외한다. |
| **제57조의2(도시계획시설의 건폐율)** (생략) | **제60조의2(도시계획시설의 건폐율)** (현행과 같음) |
| 1. ~ 2. (생략) | 1. ~ 2. (현행과 같음) |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신 설> | **제60조의3(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른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이 추가 편입부지에 증축하는 경우(2016년 12월 31까지 증축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적용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
| **제60조의2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건폐율의 완화)** (생략). | **제60조의4(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건폐율의 완화)** (현행과 같음) |
| **제60조의3(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문화재보호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 **제60조의5(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 제57조 ---------- 제35조 ----------.<br>---<br>---<br>---. |
| **제61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br>1. ~ 21. (생략)<br><신 설><br>② ~ ⑦ (생략) | **제61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br>---<br>---.<br>1. ~ 21. (현행과 같음)<br>22.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 수립내용에 따라 125퍼센트 이하<br>② ~ ⑦ (현행과 같음) |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제63조의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 제63조의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
| <신 설> | ① 영 제93조 제4항에 따라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 |
| 영 제93조제2항의 단서에서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기존의 건축물 중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 ② 영 제93조제5항의 ----------<br>----------<br>----------<br>----------<br>----------<br>----------<br>----------. |
| 1. ~ 4. (생략) | 1. ~ 4. (현행과 같음) |
| <신 설> | 제64조의2(사회복지시설 기부에 따른 용적률 완화) 영 제85조제11항에 따라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
| [별표 16] | [별표 16] |
|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16호 관련) |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16호 관련) |
| (생략) | (현행과 같음) |
| 1. ~ 8. (생략) | 1. ~ 8. (현행과 같음) |
|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9. ----------<br>----------<br>------- |
| 가.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 | 가. ----------<br>---------- 식품공장-------<br>---------- |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서 영 별표 16 제2호아목(1)부터 (5)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br>나. (생략)<br>10. ~ 12. (생략) | ----------.<br>나. (현행과 같음)<br>10. ~ 12. (현행과 같음) |
| [별표 18]<br><br>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18호 관련)<br><br>(생략)<br>1. ~ 7. (생략)<br>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같은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서 영 별표 19 1 제2호자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br>9. ~ 11. (생략)<br>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다만, 같은 호 나목부터 마목까지는 공공기관이 설치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만 해당된다)<br><br>13. ~ 15. (생략) | [별표 18]<br><br>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18호 관련)<br><br>(현행과 같음)<br>1. ~ 7. (현행과 같음)<br>8. ---------- 식품공장----------<br>9. ~ 11. (현행과 같음)<br>12. ----------(다만, 같은 호 나목부터 마목까지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에 한한다)<br>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br>나.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br>다. 기존시설의 환경개선을 위해 기존부지 내에 설치하는 건축물 및 시설<br>13. ~ 15. (현행과 같음) |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별표 19] | [별표 19] |
|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0조제19호 관련) |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0조제19호 관련) |
| (생략) | (현행과 같음) |
| 1. ~ 3. (생략) | 1. ~ 3. (현행과 같음) |
|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은 제외한다.) |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br>(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외의 지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되는 경우(영 별표 20 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br>(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것으로서 영 별표 20 제1호자목(7)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br>(3) 레미콘, 아스콘공장(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고양시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은 제외한다.) |
| 5. (생략) | 5. (현행과 같음) |
| [별표 20] | [별표 20] |
|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20호 관련) |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20호 관련) |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생략)<br>1. ~ 8. (생략)<br>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다만, 같은 호 나목부터 마목까지는 공공기관이 설치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만 해당된다)<br>10. ~ 13. (생략) | (현행과 같음)<br>1. ~ 8. (현행과 같음)<br>9. ----------(다만, 같은 호 나목부터 마목까지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에 한한다)<br>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br>나.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br>다. 기존시설의 환경개선을 위해 기존부지 내에 설치하는 건축물 및 시설<br>10. ~ 13. (현행과 같음) |
| [별표 22]<br><br>**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22호 관련)**<br><br>(생략)<br>1. ~ 10. (생략)<br>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br>12. ~ 13. (생략) | [별표 22]<br><br>**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22호 관련)**<br><br>(현행과 같음)<br>1. ~ 10. (현행과 같음)<br>11. ---------- 식품공장<br>12. ~ 13. (현행과 같음) |

**고양시 고시 제2015 - 62호**

## 도시계획시설(대로2-12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고양시 고시 제2014-381호(2014.12.16)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되어 시행 중인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352-11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대로2-12호선, 서오릉로 지하차도, 창릉교 확장)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기간 연장 등의 사유로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되어,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및 같은법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실시계획의 고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실시계획의 고시) 따라 변경인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02월 일
고 양 시 장

**1) 사업시행자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의 내용**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352-11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대로2-12호선, 서오릉로 지하차도, 창릉교 확장)

다. 사업의 규모 및 면적(변경없음)

| 구분 | 규 모 | | | | 연장 (m) | 면적 (㎡) | 기정 | 종점 | 비고 |
|---|---|---|---|---|---|---|---|---|---|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 | | | | |
| 결정 | 대로 | 2 | 12 | 30~89 | 5,625 | | 광장4<br>성사동272-4 | 용두동1-44 | |
| 금회 시행 | 대로 | 2 | 12 | 30~89 | 802 | 23,273 | 원흥동 352-6 | 용두동 928 | 지하차도,<br>창릉교확장 |

라.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돌마로 172 (정자동 217)
-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재영)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변경)
◯ 당초) 2012.01.06. ~ 2015.02.28..
◯ 변경) 2012.01.06. ~ 2015.04.30.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 "별첨" 조서와 같음 (변경없음)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관계인 주소, 성명 : "바" 항과 동일

아.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다" , "바" 항과 같음

**2) 관계도면 : "게재생략"** (변경없음)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조서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변경없음)

**고양시 고시 제2015-63호**

## 도시계획시설(오수중계펌프장)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고양시 고시 제2014-383호(2014.12.16)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되어 시행 중인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109-1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오수중계펌프장)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기간 연장 등의 사유로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되어,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실시계획의 고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실시계획의 고시) 따라 변경인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03월 03일
고 양 시 장

**1) 사업시행자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의 내용**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109-1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사업(오수중계펌프장)

다. 사업의 규모 및 면적(변경없음)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치 | 면적 | 최초결정일 | 비고 |
|---|---|---|---|---|---|
| 하수도 | 오수중계펌프장 | 도내동 109-1번지 | 1,100 | 국토부고시 제2009-935호 09-09-28 | |
| 하수도 | 오수중계펌프장 | 도내동 109-1번지 | 1,100 | | |

라.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돌마로 172 (정자동 217)
-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재영)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변경)
◯ 당초) 건축허가일 ~ 2015.02.28.
◯ 변경) 건축허가일 ~ 2015.04.30.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 "별첨" 조서와 같음 (변경없음)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관계인 주소, 성명 : "바" 항과 동일

아.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다", "바" 항과 같음

**2) 관계도면 : "게재생략"** (변경없음)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조서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변경없음)

고양시 고시 제2015 - 64호

# 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고양시 고시 제2009-106(2009.05.04.)호로 결정된 일산동구 설문동 728-4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소로1-218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지형도면고시)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고양시청 도시계획과(031-8075-3083)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5. 3. 3.

고 양 시 장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 구분 | 규모 | | | | 기능 | 연장 | 위치 | | 사용형태 | 주요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 | 기점 | 종점 | | | | |
| 기정 | 소로 | 1 | 218 | 10 | 국지도로 | 2,107 | 대로3-29 성석동 987-1 | 대로2-19 설문동 728-4 | 일반도로 | - | 고양시고시 제2009-106호 (09.05.04.) | |
| 변경 | 소로 | 1 | 218 | 10 | 국지도로 | 2,107 | 대로3-29 성석동 987-1 | 대로2-19 설문동 728-4 | 일반도로 | - | 고양시고시 제2009-106호 (09.05.04.) | 법면부지 일부제척 |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 변경전도로명 | 변경후도로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 소로1-218호선 | 소로1-218호선 | ○ 법면부지 일부 선형변경 | ○ 주변 토지개발로 불필요하게 된 도로 법면부지 일부 제척에 따른 선형변경 |

□ 결정도 및 지형도면은 개제생략하며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ис.mltm.go.kr)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